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0
------	------

2012. 10. 05.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년 8월 22일

나. 제안자 : 박기열 의원(찬성자 16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10월 0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방송본부장”의 명칭은 2007년 7월 교통방송의 명칭이 “교통방송본부”에서 “교통방송”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교통방송 책임자의 명칭변경이 필요함.

- 또한 교통방송이 다른 방송사와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의 명칭을 “본부장”이라 칭함으로써 교통방송의 장이 교통방송 내의 하부조직의 장인 것으로 인식됨으로 인해서 교통방송의 위상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통방송 책임자의 명칭을 현재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교통방송 책임자의 위상을 높이고, 타 방송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기관의 대외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변경함(안 제103조 및 제10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연혁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¹⁾이 다른 방송사와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의 명칭을 “본부장”이라 칭함으로써 교통방송의 장이 교통방송 내의 하부조직의 장인 것으로 인식됨으로 인해서 대외 기관 및 단체 등과 방송업무 제휴시 교통방송의 위상이 저해되고, 대외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 교통방송본부장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8. 11)으로 교통방송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교통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며, 대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11일 서울에서 개국된 교통·기상 전문 안내방송국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경 교통방송준비단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말부터 교통방송국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1989년 7월 25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교통방송국’ 설립인가를 받았음. 운영관리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에서 하며, 예산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전체세출의 약 66%를 지원하고 있음(2011년도 세출은 약 370억원임). 또한,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라디오 개국 이후 2005년 tbs TV, 2008년 tbs eFM 및 2009년 tbs DMB TV 개국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진 종합방송매체로 성장해 왔으며, 하루 24시간에 걸쳐 교통소통 및 정체지역, 교통관련 행정조치, 교통질서 캠페인 등의 안내방송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여행목적지의 상세한 기상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전자식 감지기에 감지된 시간별 교통량, 도로별 운행속도, 교통정체 상황과 이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를 보도하고 있음.

- 이에 제216회 임시회(2009. 6)에서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는 안건을 시장이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 소속행정기관(사업소)의 장에게 “대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 유사기관 등과 형평성과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사용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변경(안 제103조, 안 제104조)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사장’은 법령상 명확한 정의를 갖는 용어는 아니며, 다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위로 해석됨(상법 제395조). 또한, ‘사장’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사용되며, 이때 회사는 상행위 등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책임자로 지칭됨.
- 따라서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대표에게 사용하는 ‘사장’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 위계질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의원발의로 지방의회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법률자문에 따르면,
 - 의원의 발의안이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책임자에 관한 명칭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 이에 반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합, 폐지는 의결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6조), 지방의회가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 입법·법률 자문 결과 >

구 분	A 법률사무소	B 법률사무소	C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원발의 개정 가능 여부	불가	가능	집행부와 의견조율

- 위와 같이 입법·법률자문의 논자에 따라 법률 해석을 달리하므로, 의원 입법발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합법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본부장’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방송의 대표성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교통방송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장 tbs 대표”라는 명칭을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독립법인화 계획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있는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공식 검토된 바는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통방송의 대표성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장(본부장)의 명칭변경을 “사장”이 아닌 “대표”로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사장’에서 ‘대표’로 변경함.(안 제106조 및 안 제107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00
----------	---------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05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교통방송의 대표성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장(본부장)의 명칭 변경을 “사장”이 아닌 “대표”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사장’에서 ‘대표’로 변경함(안 제106조 및 안 제107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6조 제목 “(사장)”을 “(대표)”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장을”을 “대표를”로, “사장은”을 “대표는”으로 한다.

안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장은”을 “대표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6조(본부장) 교통방송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 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p>	<p>제106조(사장) ----- 사장을-----, 사장은 ----- ----- -----, ----- -----.</p>	<p>제106조(대표) ----- 대표를-----, 대표는 ----- ----- -----, ----- -----.</p>
<p>제10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 략)</p>	<p>제107조(소관사무) 사장은 -- -----. 1. ~ 5. (현행과 같음)</p>	<p>제107조(소관사무) 대표는 -- -----. 1. ~ 5.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목“(본부장)”을“(대표)”로 하고, 같은 조 중 “본부장을”을 “대표를”로, “본부장은”을 “대표는”으로 한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은”을 “대표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조 중 “교통방송본부장”을 “교통방송 대표”로 하고,

제17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을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6조(<u>본부장</u>) 교통방송에 <u>본부장을</u> 두고, <u>본부장은</u>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06조(<u>대표</u>) -----<u>대표를</u> -----, <u>대표는</u> ----- -----,----- -----.</p>
<p>제107조(소관사무) <u>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략)</p>	<p>제107조(소관사무) <u>대표는</u> ----- -----. 1. ~ 5. (현행과 같음)</p>